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9. 17.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년 9월 3일  
이종호 의원 외 6인  
(이종호, 이필용, 김환동, 박재국, 연만흙, 강태원, 조영재)

2. 회 부 일 자 : 2007년 9월 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 9. 1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2005. 3.24)」  
과 「지방자치법(2007.5.1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의 문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및 조문의 정비(안 제1조)

- (1)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3.24 개정)
- (2) 「지방자치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126조(2007.5.11 개정)

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0조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 및 공고를 하지 않을시 부과하던 과태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및 제6조).

다.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리(안 제3조).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음.

○ 개정내용 중 특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된 것은 많은 도민이 인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음.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 제 보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 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조(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절 제 차)</p> <p>①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는 다음 각호 와 같이 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은 30일 이상 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간신문에 게재</li> <li>2.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에 게시</li> <li>3.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 수의 승인을 얻은 장소에 게시</li> </ol> <p>②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주택 의 분양안내문 제작이나 분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의 부과대상자</li> <li>2.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평형별 납부금 액</li> </ol>	<p>제 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 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 5조의 2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 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 12조 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학교용지부 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 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현 행	개 정 안
<p>3.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③개발사업 및 분양계획의 승인권자가 개발사업계획 또는 분양계획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p>	
<p>제 3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7조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생략)</p>	<p>제 3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                      -----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 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조사서, 과태료 등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제)</p>

관계법령 발취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현 행	개 정 전
<p>第5條(負擔金の 賦課·徵收) ①시 도 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 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5.3.24&gt; 1.~6. (생략)</p> <p>②삭제 &lt;2005.3.24&gt;</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の 賦課·徵收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lt;개정 2005.3.24&gt;</p> <p>④(생략)</p>	<p>第5條(負擔金の 賦課 徵收) ①市 道 知事는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移住 用 宅地로 分讓받은 土地를 제외한 다) 또는 共同住宅(賃貸住宅을 제 외한다)등을 分讓 받는 者 에게 負擔 金を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2제 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 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 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2.2.4, 2002.12.5, 2003.5.29&gt;</p> <p>②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 승인 에 따른 土地 또는 住宅 의 分讓公 告시 負擔金の 賦課·徵收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の 賦課·徵收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 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해당 市·道の 條例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p>

현 행	개 정 전
<p>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5.3.24]</p>	<p>第10條(過怠料) ①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負擔金의 賦課 徵收에 관한 사항을 公告하지 아니한 開發事業施行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본조신설 2000.1.28]</p>

제9조(권한의 위임) ①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생략)

###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후 7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

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0]

##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